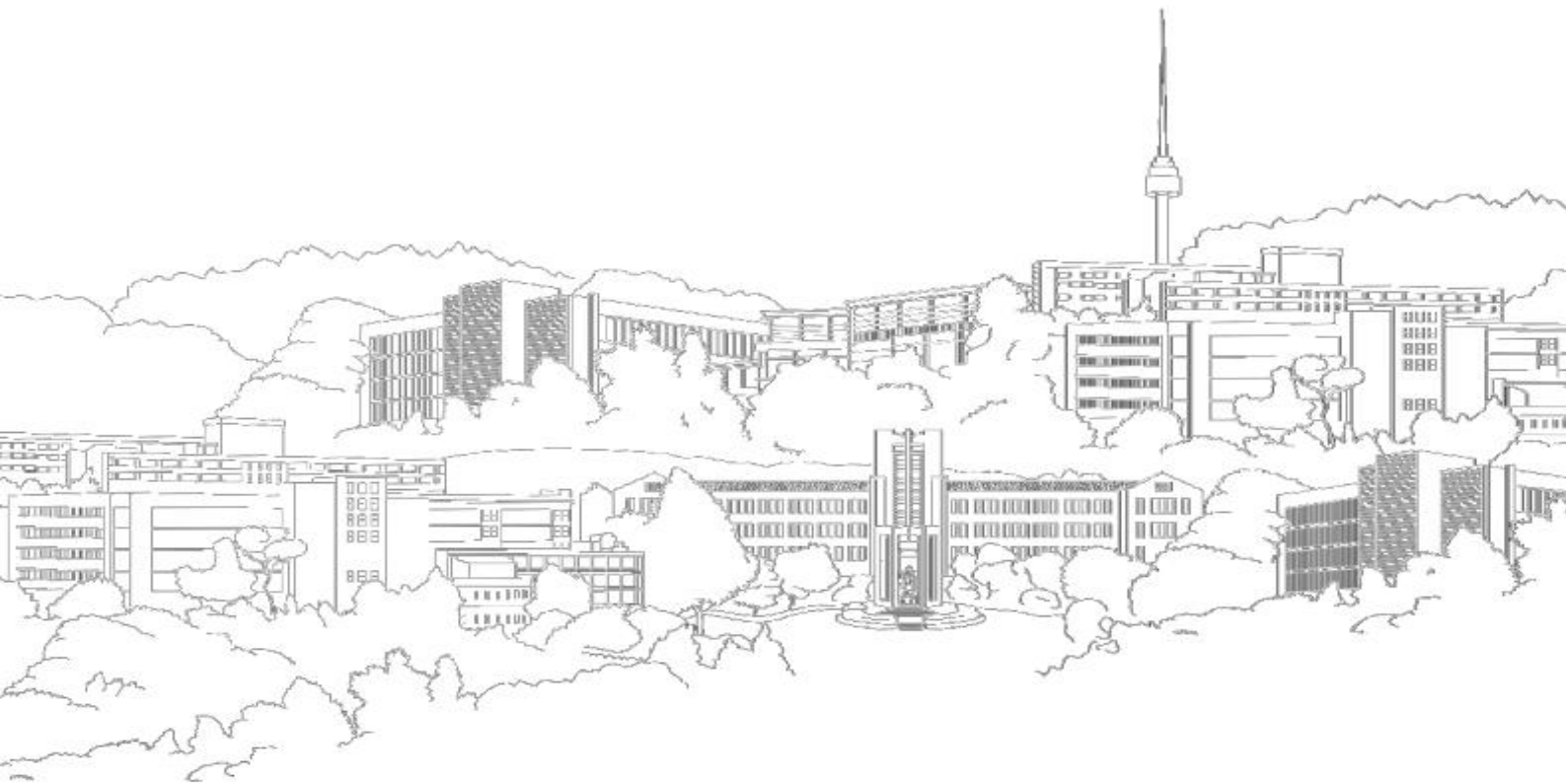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2.05.



<p>■ Part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p>	<p>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01 p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02 p 전형일정 04 p 원서접수 05 p 수험생 유의사항 07 p</p>
<p>■ Part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부사항</p>	<p>지원자격 10 p 필답고사 및 서류심사 안내 11 p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12 p 자격인정 공통사항 13 p 재학기간 인정기준 16 p 제출서류 18 p</p>
<p>■ Part 3. 기타</p>	<p>합격자 사정원칙 22 p 전형료 23 p 합격자 발표 및 등록(최초 및 충원) 24 p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26 p 합격취소 및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 26 p 장학제도 27 p 제출서식 31 p</p>

■ Part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전형일정	4
원서접수	5
수험생 유의사항	7

1. 모집인원

전형명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	자연계열	계	비고
재외국민(일반)	33명	21명	54명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49명	31명	80명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단위별 모집)
북한이탈주민	48명	32명	80명	

2. 전형방법

- ▶ 재외국민(일반),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공통
- ▶ 1단계 : 필답고사 100% / 2단계 : 서류심사 100%

구분	계열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비고
1단계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	필답고사(국어 50% + 영어 50%)	5배수 선발
	자연계열	필답고사(수학 50% + 영어 50%)	
2단계	공통	서류심사(Pass/Fail) 100%	-

3. 지원자격

전형명	내용
재외국민(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재학기간 : 고등학교과정 1년 포함 중·고등학교과정 3년 이상 수료 ▶ 국외체류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 1개년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 1개년 기간의 2/3 이상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 세부 내용은 10쪽 참조

4. 전형일정

- ▶ 원서접수 : 2022.07.06.(수) 10:00 ~ 07.08.(금) 17:00 (인터넷 접수)
- ▶ 필답고사 : 2022.07.17.(일) 10:00 ~

※ 세부 내용은 4쪽 참조

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인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재외국민 (일반)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불교	불교학부 <small>교직</small>	인문	-	1	1	
	문화재학과		1	2	2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인문	2	2	2	
	영어영문학부		2	3	3	
	일본학과		1	2	2	
	중어중문학과 <small>교직</small>		2	5	5	
	철학과 <small>교직</small>		-	1	1	
	사학과 <small>교직</small>		1	2	2	
이과	수학과 <small>교직</small>	자연	1	2	2	
	화학고 <small>교직</small>		1	2	2	
	통계학과		1	2	2	
	물리·반도체과학부		1	1	1	
법과	법학과 <small>교직</small>	인문	2	3	3	
사회과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2	2	2	
		행정학	2	2	2	
		북한학	-	1	1	
	경제학과	인문	1	2	2	
	국제통상학과		2	3	3	
	사회·언론정보학부		-	1	1	
	식품산업관리학과		사회학	2	3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	1	1
광고홍보학과	2	2	3			
사회복지학과	-	1	2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인문	3	3	-	
경영	경영학과	인문	3	3	3	
	회계학과		1	1	1	
	경영정보학과		1	1	1	
바이오 시스템	생명과학고 <small>교직</small>	자연	-	1	1	
	바이오환경과학과		-	1	1	
	의생명공학과		1	2	3	
	식품생명공학과		1	1	1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자연	3	3	3	
	정보통신공학과		1	2	2	
	건설환경공학과		-	1	1	
	화공생물공학과		2	2	2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	2	2	
	건축공학부		-	1	1	
	산업시스템공학과		1	2	2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1	1	1	
시융합	시소프트웨어융합학부★	자연	4	5	5	
사범	국어교육과	인문	1	-	-	
	수학교육과	자연	1	-	-	
예술	영화영상학과 <small>교직</small>	예체능	2	2	2	
계			54	80	80	

※ 「★」 표시된 시소프트웨어융합학부는 2023학년도 신설 모집단위입니다.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최대모집 가능인원>까지만 선발합니다.

모집 관련 유의사항

▶ 지원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교직** 표시된 학과(전공)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다만,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의 경우 졸업시점에 전공을 결정하므로, 2학년 중 교직신청은 가능하나 졸업시점에 교직과정 설치가 안 된 전공으로 졸업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2) 전공결정 시점 - (졸업 시)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 경찰행정학부
(2학년 진급 시) 영어영문학부, 건축공학부
※ 신설 모집단위인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의 전공결정 시점은 추후 안내 예정
- 3) 불교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며, 전과 불가(복수전공 가능)
- 4) 경찰행정학부 지원자 중 경찰 또는 공안기관 등에 진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 임용자격을 참고 바람
- 5) 바이오시스템대학은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소속 바이오메디캠퍼스(고양시)에서 수업이 이루어짐
- 6)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건축공학 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 AI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컴퓨터공학전공)의 신입생은 심화과정(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소속되며, 학과별 심화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7) 건축공학부(건축학전공)의 신입생은 심화과정(건축학교육인증제도 운영프로그램-건축사자격인증교육)에 소속되며, 이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8)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전공과목, 교직과목, 성적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우리대학 『교직과정 이수 가이드』를 참고 바람
- 9) 영화영상학과는 예체능계열이지만 실기평가를 하지 않고 인문계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충원 시 충원원칙

▶ 각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만큼 합격자를 충원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에 따라 충원합니다.

- 1) 해당 미충원 모집단위가 속한 학부 내 타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
- 2) 1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
- 3) 1번, 2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계열(인문, 자연, 예체능) 내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 다만, 영화영상학과 미충원 시에는 인문계열 건제순으로 충원)
- 4) 다만, 다른 모집단위에서 1명을 이월 받은 적이 있는 모집단위에 추가로 충원 기회가 올 경우 다음 순위의 모집단위에게 그 기회를 순차적으로 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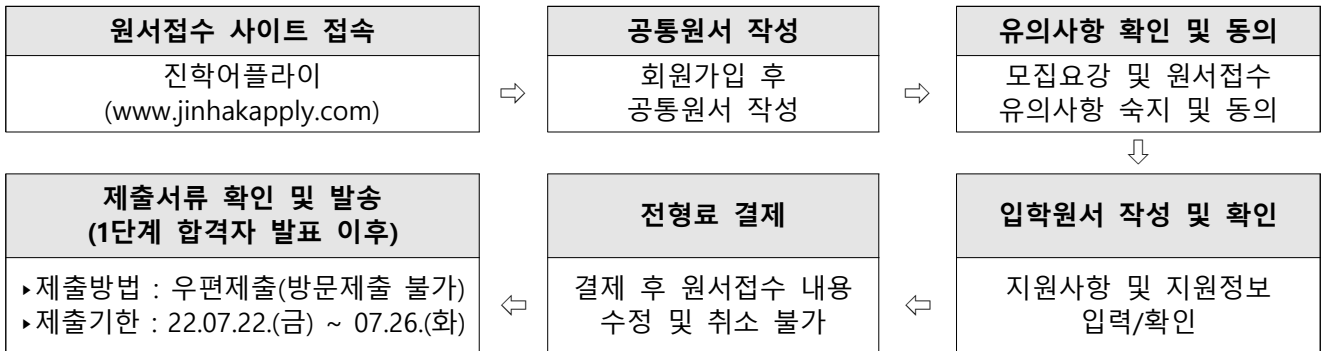
구분	일정	세부 사항
원서접수	2022.07.06.(수) 10:00 ~ 07.08.(금)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원서접수 ▷ 원서접수 단계에서 아래 서류를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일반) - <u>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부모) 각각 PDF 업로드</u>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 <u>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PDF 업로드</u>
필답고사장 안내	2022.07.12.(화) 예정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필답고사	2022.07.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 10:00~11:20(80분) ▶ 자연계열 : 10:00~11:40(100분) ▷ 고사장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실, 고사시간, 유의사항 등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서 확인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07.21.(목) 예정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서류제출 (1단계 합격자)	2022.07.22.(금) ~ 07.2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우편제출(방문제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26.(화) 소인까지 유효, 우리대학 입학처로 우편제출 ▶ 제출 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도착여부 확인 가능
최초합격자 발표	2022.08.25.(목) 예정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최초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온라인 문서 등록)	2022.12.16.(금) ~ 12.19.(월)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확인 ▷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
충원합격자 발표	2022.12.20.(화) ~ 12.26.(월)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 2차 ~ 최종 : 개별통보
충원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온라인 문서 등록)	2022.12.27.(화) 16: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확인 ▷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
등록금 납부	2023.02.07.(화) ~ 02.09.(목) 16:00	납부기간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 안내 예정

1. 주요사항

구분		내용
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07.06.(수) 10:00 ~ 07.08.(금) 17:00
	접수방법	▶ 온라인 원서접수(별도 방문접수 없음)
	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문의	▶ 진학어플라이 : 1544-7715 ▶ 동국대학교 입학처 : 02-2260-8861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우리대학 글로벌입학팀(☎02-2260-4944)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① 수시 복수지원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간 복수지원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회**까지 가능하며 지원횟수는 수시모집 전체(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원서접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해 원서접수 시간순으로 6회를 초과한 원서접수부터** 취소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합격)이 취소됩니다.
- ▶ 지원횟수 산정 기준은 "대학별" 또는 "전형료납부" 기준이 아닌 각 "전형의 원서접수" 건수를 각각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우리대학 복수지원 허용 : **최대 5회 지원 가능(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시 최대 6회 지원 가능)**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실기	논술	실기/실적
Do Dream, Do Dream(소프트웨어), 특성고등졸업한재직자	불교추천인재, 고른기회통합,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인재, 실기(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논술	실기(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영화영상학과, 한국음악과)
1회	1회	1회	1회	1회

- ②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원서접수 마감 일시 : 2022.07.08.(금) 17시 정각(접수업체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 이전에 원서작성을 완료(원서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완료한 상태)한 지원자에 한하여 17시 15분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 ③ **접수(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전형유형, 모집단위 변경 및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④ 지원자 인적사항은 입학원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전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⑤ 접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필답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기타 자세한 방법은 26쪽 참조
- ⑥ 원서접수 시 사진을 등록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원서접수 전 사진 파일(jpg, gif)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가) 수시모집 복수지원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간 복수지원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회**까지 가능하며 지원횟수는 수시모집 전체(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원서접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해 원서접수 시간 순으로 6회를 초과한 원서접수부터 취소**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합격)이 취소됩니다.
- ▶ 지원횟수 산정 기준은 “대학별” 또는 “전형료납부” 기준이 아닌 각 “**전형의 원서접수**” 건수를 각각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이중등록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및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및 충원)는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수시모집 등록금(등록예치금 포함)을 2개 이상 대학에 납부한 경우,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 우리대학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경우 1개 전형에만 등록(등록예치금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합격취소

-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을 확인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우리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2. 유의사항

가) 모든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 지원자격 미달자
- ▶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 ▶ 제출서류의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 ▶ 필답고사 결시자,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 중 추가 신분증명을 못한 자
- ▶ 1단계 합격 후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 조건부 합격자(14쪽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다)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에 추후 확인함).

- 라) 최종합격자 중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2023년 3월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마) 최종합격자 중 국외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바) 대학입학 전형 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사) 홈페이지를 통한 합격자 발표는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를 통하여 진행하며,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정(24~25쪽)을 참고하여 반드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아) 합격(충원합격 포함)을 통보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예치금(온라인 문서등록)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 필답고사 당일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미 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고사 시작시간 이후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차)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 필답고사 응시대상자 중 고사진행에 있어 별도관리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직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응시방법 등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신입생 전형절차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온라인 제공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가)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 성적 및 합격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모든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우리대학은 지원자가 입력한 정보를 입학관련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고사장 안내, 합격자 발표 안내를 위한 메일/SMS 발송 등 입학업무 진행을 위한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부정행위자 처리방침

- 가)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기재누락, 허위,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또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대학에 지원(응시)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를 통해 우리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도 입학(합격)을 취소합니다.
- 나)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전형료)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 우리대학 및 타 대학에서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Part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부사항 ■

지원자격	10
필답고사 및 서류심사 안내	11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12
자격인정 공통사항	13
재학기간 인정기준	16
제출서류	18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외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전형명	세부 자격구분/특기사항	자격 요건
재외국민(일반)	국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근무 상사주재원의 자녀	
	국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	
	정부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교육·출장을 목적으로 체류한 자의 자녀 (※ 유학생의 자녀 제외)	
	국외 선교사의 자녀	
	영주권 취득 국외 교포 자녀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우리나라 초·중·고(6-3-3)와 12년 교육연한을 기준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 검정고시 지원 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개정예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 국가 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필답고사 범위

계열	과목	범위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등 국내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자연계열	수학	수학, 수학1, 수학2 범위로 국내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공통	영어	수능 영어 범위로 국내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 교과서 및 EBS 교재를 활용한 국내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2. 필답고사 방법

계열	과목	시간	문항 수	유형	배점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	국어 + 영어	80분 (휴식시간 없음)	국어 : 25문항(50점) 영어 : 25문항(50점)	4지선다형 객관식	각 문항별 1~3점
자연계열	수학 + 영어	100분 (휴식시간 없음)	수학 : 25문항(50점) 영어 : 25문항(50점)		

3. 서류심사 안내

- ▶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요청
- ▶ 서류심사는 지원자격의 적격여부만 판단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 ▶ 국외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국외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 ▶ 국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전형명	최소 국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학 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일반)	3년	학생 국외재학기간의 3/4	3년	학생 국외재학기간의 2/3	학생 국외재학기간의 2/3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12년	12년	-	-	-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	-	-

- 1) 위 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등학교 과정 1개년을 포함한 최소기간을 의미합니다.
- 2)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3)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4)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이며,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재학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5)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국외학교 인정기준

- 가)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 과정 불인정)
- 다) 국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교시 등 포함) 출신자는 국외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합니다. (※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라) 초·중·고등학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국외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가) 보호자(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고등학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자격요건 인정기간입니다. (보호자(부모) 근무와 학생의 재학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국외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자격요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
- 나)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라)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3개 학기
국외 학교								누락															누락		

-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 G11-1의 누락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2개 학기
국외 학교							누락	누락															누락		

- ※ 중복학기 G2-1~G2-2중 한 개 학기만 G4-1~G4-2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하며, G11-1의 누락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마)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바) 학기 이수여부 인정기준

-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 유무**를 기준으로 해당 학기를 이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또는 기말고사만 시행한 경우(초등학교 등)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3(소수점 절사) 이상**을 이수했다면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	지원자 재학·체류 자격종료시점	보호자(부모) 근무·체류 자격종료시점	비고
기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3년 3월 졸업예정자(일본 등)	지원자 2023년 3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3년 3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 다만, 보호자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함

※ 조건부 합격자 : 졸업예정자 중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부모)의 지원자격은 미충족하였으나, 졸업시점에 모든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합격통보를 받은 자

4.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국외고등학교 재학기간과 국외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국외근무·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타

- 가)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재외국민(일반)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대학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라) **국내 체류 중 국외학교 원격 수업 등의 학기 이수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주요국가 학제 및 총 수학기간

국가명	학제			총 수학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12년
중 국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12년
미 국	1-5학년	6-8학년	9-12학년	12년
호 주	1-6학년	7-10학년	11-12학년	12년
필리핀	1-6학년 (1-8학년)	1-4학년 (9-12학년)		10년 (12년)
말레이시아	1-6학년	7-11학년(초급 3년, 상급 2년)		11년
영 국	1-6학년	7-13학년		13년
뉴질랜드	1-7학년	8-10학년	11-13학년	13년

※ 필리핀의 경우 2018년 졸업자부터 12학년제 졸업자로 인정

1.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6-3-3제) 교육연한 12년 기준
- 나) 13년 이상 학제인 국외고등학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2학년을 수료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0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1
·	13년제 → 12년제 또는 12년제 → 13년제 이동한 경우에는 불법·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12년 학제인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라) 12년 미만 학제인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2. 국내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 가) 국내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구분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	국내학교																											X	X	23개학기		
	국외학교																											X	X			
B	국내학교																													X	X	13학년제 → 12학년제 혼 합이수
	국외학교 (13학년제)																															
	국외학교 (12학년제)																													X	X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구분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C	국내학교																											23개 학기미달
	국외학교																											
D	국내학교																											고교 1개 학년미달
	국외학교																											
E	국내학교																											11년제
	국외학교																									X	X	

1. 인정기준 세부사항

- 가)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
(※ 예시 :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 나)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
 -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한 교육과정의 부족분 기간만큼은 해당국 정규 대학교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2. 기타

- 가)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수학기간의 결손이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시 : 국내초등학교에서 G1-1 이수 후 재외한국학교(동일 학년제)에서 G1-2부터 수학한 경우, 국외에서 총 23개 학기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 불가)
-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예시 : 국내초등학교에서 G1-1의 1/3 이수 후 재외한국학교(동일 학년제)에서 G1-1의 나머지 2/3를 수학한 경우, 국외에서 총 24개 학기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 가능)
- 라)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

1. 재외국민(일반)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제출서류 목록

번호	구분	재외국민(일반)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비고
		공무원	상사직원	국외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정부유치 과학자/교수 요원	현지법인 근무자	현지자영업자	교육출장 목적 체류자	국외 선교사	국외 영주 교포의 자녀		
1	입학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2	서류심사 지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3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시 서식 다운로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5	초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 재학기간 명기 •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재학 증명서 별도 제출
6	중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8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	○	○	○	○	○	○	○	○	※ 각주 참고
9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	○		국외근무기간 명기
10	정부초청추천서			○	○							
11	국외파견 교육·출장관련 증명서							○	○			
12	국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국외직접 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13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14	사업자 등록증(해당국) 사본							○				사업기간 명기
15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증명서					○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제출
16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17	영주권 사본(학생, 부, 모)									○		영주권 취득일이 반드시 명기
18	여권 사본(학생, 부, 모)	○	○	○	○	○	○	○	○	○	○	학생만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19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부, 모)	○	○	○	○	○	○	○	○	○	○	학생만 해당서류의 스캔본(PDF)을 원서접수 시에도 업로드 제출
20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학생, 부, 모)	○	○	○	○	○	○	○	○	○	○	학생만 우리대학 소정서식
2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학생, 부, 모)	○	○	○	○	○	○	○	○	○	○	학생만 현지 영사관 또는 온라인 발급
22	주민등록말소등본										○	
23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24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주민의 경우 제출
25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처에서 공증한 원본
26	제3국 수학인증서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영사관

※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해당 국외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및 브로셔 등도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2.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목록

- 가) 입학원서 1부
- 나) 북한이탈주민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 1부
- 다) 학력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국내고등학교 출신자가 아닌 경우) 1부
- 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 1부
- 마)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 1부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1단계 합격자만 서류를 제출합니다.
- 나)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는 추후 최종 합격 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다) 근무·체류기간 관련서류는 <지원자격요건 충족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수학기간 확인을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라)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국외 발급서류는 국외에서의 재학·근무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 마) 제출서류별로 성명이 다를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바)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
 -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 국외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또는 「재외교육 기관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
 - ▶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영사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제출
 - ▶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처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 외교부 영사 콜센터 (☎02-3210-0404)
- 사) 재외국민(일반)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우리대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차)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에 미달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카) 조건부 합격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국외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 타)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제출 방법

No	구분	내용
1	대상	▶ 대상자 :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 전원
2	기간	▶ 2022.07.22.(금) ~ 07.26.(화) (07.26.(화) 소인까지 유효)
3	제출처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1층 입학실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
4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제출(방문제출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원서접수 시 원본 PDF 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원서접수 완료 후 「입학원서」와 「서류심사지원서」 출력하여 함께 제출 ▶ 원서접수 완료 후 「학력조회 동의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열람 신청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또는 원서접수 후 [출력물]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해당하는 모든 「지원자격 관련 서류」 구비 후 다음 방법에 따라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출서류 목록(18쪽 참조)의 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 ② 포스트잇 등으로 서류 간 구분 ③ 모든 제출서류 한꺼번에 집게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물] 탭에서 「우편발송용 봉투 라벨지」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미비한 부분 있을 시 추가 제출 요청 예정
5	제출서류 도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확인 ▶ 제출일 다음날부터 도착여부 확인 가능
6	조건부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2.24.(금)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합격자(졸업예정자 등) - 최종합격자 중 사본 서류 제출자

5. 합격 후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2022년 7월 이후 국외고등학교 졸업자 (재외한국학교 포함)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조건부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 및 보호자(부모)의 해외 근무·체류 관련 모든 서류 ※본인 지원자격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 제출 ▶ (해당자) 코로나19 관련 미충족 사유서 및 증빙 서류 ▶ (해당자) 사본 서류 제출자는 원본 서류 제출

■ Part 3. 기타 ■

합격자 사정원칙	22
전형료	23
합격자 발표 및 등록(최초 및 충원)	24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26
합격취소 및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26
장학제도	27
제출서식	31

1.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최종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① 필답고사 국어 성적 상위자 ② 필답고사 국어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③ 필답고사 영어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자연계열	① 필답고사 수학 성적 상위자 ② 필답고사 수학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③ 필답고사 영어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 1단계 성적 동점자는 2단계 서류심사 대상자로 모두 선발합니다.

2. 최종단계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 지원자격 미달자
- ▶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 ▶ 제출서류의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 ▶ 필답고사 결시자,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 중 추가 신분증명을 못한 자
- ▶ 1단계 합격 후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 조건부 합격자(14쪽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 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4. 최종단계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5. 대학입학 전형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신입생 전형절차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 전형료

전형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납부 시 입학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전형명	모집단위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재외국민(일반)	공통	90,000원	50,000원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10,000원

※ 1단계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전형료 환불 및 금액

- ▶ 전형료 환불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 ▶ 접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필답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1단계에 불합격하더라도, 반환되는 전형료는 없습니다.
- ▶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등 수험생의 귀책으로 인한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분	환불금액	비고
천재 또는 지변 전형일자의 사후 변경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질병으로 인한 필답고사 미응시	55,000원	▶ 환불신청서(소정서식), 병원장 발행 진료 또는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환불신청기한 : 고사일로부터 5일 이내 17:00까지
접수취소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환불 신청한 것에 한함 ▶ 수시 최대 6회 복수지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3. 전형료 지출잔액 발생 시 환불 안내

- ▶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발생 시, 전형료 잔액을 2023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우리대학 직접 방문 수령
- ▶ 다만,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전산망 이용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최초합격자 발표

구분	발표일자	발표방법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07.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안내 ▶ 합격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발표	2022.08.25.(목)	

※ 최초합격자 발표 시 충원합격자에 적용되는 예비순위도 발표함

2. 등록방법

구분	세부사항
최초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온라인 문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2.16.(금) ~ 12.19.(월) 16:00 ▶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확인함 ▶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등록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2.07.(화) ~ 02.09.(목) 16:00 ▶ 등록금액 : 등록기간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안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하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등록을 완료하기 바람 ▶ 등록금 납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 우리대학 지정은행 납부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연이체서비스, 개인사유 등 기간 내 미입금 처리에 따른 합격 취소에 유의 ▶ 납부확인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확인

※ [참조] 2022학년도 등록금 및 입학금 현황

계열	수업료	입학금	비고
인문/사회계열	3,469천원	204천원	전년대비 입학금 인하, 수업료 동결
이학/체육계열	4,025천원		
공학/예능계열	4,580천원		
약학계열	5,658천원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충원합격자 발표

전형명	발표일정	발표방법
재외국민(일반)/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2022.12.20.(화) ~ 12.26.(월) 18:00 ※ 세부일정 홈페이지 안내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발표일정에 진행)	▶ 1차 :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 ▶ 2차 ~ 최종 : 개별통보

2. 등록방법

구분	세부사항
충원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온라인 문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원합격자 등록은 합격 통보 시 등록기간 및 방법 안내 예정 ▶ 최종충원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마감일시 : 2022.12.27.(화) 16:00 ▶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확인함 ▶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등록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2.07.(화) ~ 02.09.(목) 16:00 ▶ 등록금액 : 등록기간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안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원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하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등록을 완료하기 바람 ▶ 등록금 납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 우리대학 지정은행 납부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연이체서비스, 개인사유 등 기간 내 미입금 처리에 따른 합격 취소에 유의 ▶ 납부확인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확인

3. 유의사항

- ▶ 합격 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등록금 납부방법 및 합격자 유의사항은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재외국민 특별전형 예비합격순위자 중 충원발표기간 **연락 두절로 충원합격통보가 되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처리되어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가 변경된 지원자는 반드시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예비순위자는 충원합격 통보 종료일인 2022.12.26.(월) 18:00까지 여행을 자제하고 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충원합격 통보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가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1.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구분	세부사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받고자 하는 자 ※ 등록포기 시 이를 취소하거나 반복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2.15.(수) 15:00까지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한에 따라 상이함(신청기한에 따른 신청방법 추후 홈페이지 안내) ① 온라인 신청(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생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② 입학처 유선통보 후 이메일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신청 시 제출 서류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서, 지원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각 1부, 통장사본

1. 합격취소

- 가) 우리대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의 최종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취소 대상자 및 내용

- ▶ 조건부 합격자(14쪽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 ▶ 조건부 합격자 중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 ▶ 전형 종료 후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이 적발된 자
- ▶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
- ▶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자
- ▶ 대학입학 전형 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 가) 조건부 합격자 : 14쪽 참조
 나) 최종 합격 처리

: 조건부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외국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실로 제출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 충족 시 최종 합격 처리

교내 장학

1. 불교대학장학

대상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계속지급요건
재외국민 특별전형 불교대학 최종합격자	■ 수업료 50% ■ 8학기	■ 성적기준 - 평점평균 3.5 이상 -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복원기회 : 1회

2. BMC특성화장학

대상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계속지급요건
재외국민 특별전형 바이오시스템대학 최초합격자	■ 수업료 25% ■ 1회	■ 해당사항없음

3. 문학인육성장학

대상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계속지급요건
장원	동국대학교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장원" 수상자로 우리대학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자	■ 수업료 100% ■ 4학기	■ 성적기준 - 평점평균 3.5 이상 -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복원기회 : 1회 단, 문학인육성장학(우수)는 복원기회 없음
우수	동국대학교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우수상" 수상자로 우리대학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자	■ 수업료 30% ■ 2학기	

4. 동국가족장학

대상	장학금액	지급횟수
부모, 자녀, 형제 · 자매, 부부가 우리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하고 있는 자	학부 신입생(1명) 100만원(수업료) ※ 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	1회
부모, 자녀, 형제 · 자매, 부부가 우리대학 또는 대학원에 동시에 입학한 자		
직계 3대에 걸쳐 우리대학 학사과정에 입학한 자		
우리대학 학사과정을 졸업한 부부동문의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		

5. 복지장학

장학명	대상	장학금액	지급기간	계속지급요건
복지장학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 수업료 100%	■ 8학기	장애정도 판정 받은 학생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본인)	■ 수업료 30%		
복지장학2	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 100%	■ 8학기	
보훈장학(본인)	보훈대상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	■ 입학금 100%	■ 졸업 시까지	
보훈장학(자녀)		■ 수업료 100%	■ 8학기	
교육보호장학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자)	■ 입학금 100% ■ 수업료 100%	■ 8학기	

6. 기타 교내장학

대상	장학명
우수장학	동국인재육성장학(수석), 동국인재육성장학(우수), 모범장학 등
복지장학	복지장학(1~2), SOS두드림장학, 보훈장학, 기여장학, 교육보호장학, 중단추천장학 등
근로장학	교내근로장학, 국가근로장학 등
특기장학	공로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체육특기자장학, 전문자격장학 등
불교장학	종립학교장학, 군중법사장학, 불교미술장학 등
글로벌장학	외국인장학, 교환학생장학, 해외탐방장학, 108리더스장학 등
동국리더장학	동국리더장학
대학미디어장학	동대신문사, 교육방송국, 동국포스트 장학 등

교내 장학금 지급 기준

취득학점	직전학기 평점평균	장학명
15학점 이상 (7학기 이수자는 12학점 이상)	3.5 이상	입학최우수장학, 입학우수장학, 불교대학장학, BMC특성화장학, 약학대학장학, AI융합대학장학, 문학인육성장학, 원흥장학, 동국인재육성장학
	3.0 이상	전문자격장학, 불교장학, 글로벌장학(교환학생장학, 해외탐방장학), 동국리더장학, 미래융합대학 신입생장학
※약학대학장학은 20학점 이상	2.75 이상	복지장학1(중증 장애 학생 제외), 복지장학2 /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2.0 이상	고시장학, 근로장학
제한없음	1.88 이상	보훈장학, 교육보호장학

- ※ 성적기준미달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음 학기에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이 복원됩니다.
다만, 복원기회는 1회에 한하며 BMC특성화장학(C), 약학대학장학(E), AI융합대학장학, 문학인육성장학(우수) 등의 장학은 별도 복원기회가 없습니다.
- ※ 총 수혜 학기 중 기준을 미충족한 학기도 총 지급 횟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 장학금은 정규 학기까지 지급하고,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며 재입학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장학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동국대학교 장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기숙사 우선배정 입소 관련 사항은 기숙사(남산학사, 고양학사) 기준에 따릅니다.

교외 장학

○ 불교청년지도자육성장학

총무원장장학 석암(내원정사)장학 수원사장학 능인선원장학 인서장학	성찬회장학 정심행장학 수불장학 영도장학 영산불교장학	은정불교문화장학 청호불교문화장학 민재장학 금강장학 경국사장학	정각원장학(동국대정각원불자회) 봉은사장학 전병천김정숙장학 지혜자비정진장학	불자교수회장학(동국대교수신행단체) 보현회장학(동국대직원신행단체) 여의도포교원장학 인봉장학
---	--	---	---	--

○ 동문회장학(단체)

가정교육과후배사랑장학 건설환경공학과장학 건축공학과동문장학 경찰행정학부동문장학 국교후배사랑장학 국문학과동문회장학 국어교육과후배사랑장학 기여장학 대성강업장학 대원장학 도우장학 등갑장학 동국문학인장려장학 동국장학회장학 구농동우장학 동진장학연구재단장학	라철장학 만해가사장학 만해국문과장학 목맥장학 물리학과후배사랑장학 바이오교수장학 바이오환경과학과장학 백상장학 법학과동문장학 벽담장학 부동산최교우과정동문장학 불교학생회동문장학 사학과후배사랑 사회학과기금장학 식품생명공학과장학 생협복지장학	생협우정장학 생협해외탐방장학 서봉바이오 재생의학 장학 선향장학 세원상사장학 수학과 장학 식물생명공학과장학 신한철강장학 약학대학 장학 에스원장학 여자총동창회 장학 역사교육과 장학 연극학부장학 영산불교장학 영어영문학과동문장학 영어통번역전공후배사랑장학	원풍농연장학 월드머시코리아장학 윤리문화학과 장학 으뜸장학 의생명공학과 장학 이스타항공장학 전자공학과동문장학 정각원신행장학 정각원연등장학 제자사랑장학 조소전공장학 직원노조장학 철학과 장학 최고위치안정책과정장학 컴퓨터공학과 장학	코리아카파크장학 쿠무다문화예술장학 토토축구회장학 퍼맥스장학 하이파킹장학 해산장학 행정학과 장학 현대건설재직동문회장학 현인공인회계사장학 형사법학회 장학 화공생물공학과 장학 30년 후배사랑 장학 ROTC장학 ULTRA112장학
---	--	--	---	---

○ 동문회장학(개인)

고현정장학 권오철장학 김용길동문장학 김주한손용희장학 한터장학	미산장학 박수호장학(경행) 박신양동문장학 박임순동문장학 최혜정동문장학	서현장학 설재윤장학 이규원장학 이정재장학	이종범경무관장학 이해량장학 일현장학 장옥수장학	초허당장학 최준섭We장학 송수경(갯맘)장학 김성원장학
---	--	---------------------------------	------------------------------------	--

○ 해외탐방장학

해외학술탐방장학	해외단체탐방장학
----------	----------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

가평군애향장학 강남구장학 강남구학비지원장학 강서구장학 강릉소방서장학 거창소방서장학 공군장학 과천시애향장학	광명시애향장학 국제역량육성장학 김제시장학 김포장학 남양주시장학 남해소방서장학 단양장학 부천시장학	삼척시애향장학 서울희망대학장학 성남시장학 소방대원자녀장학 시흥시애향장학 안동시장학 안산장학 용인시민장학	육군장학 은평구민장학 인천남동소방서장학 인천서부소방서장학 인천시장학 전북꿈나무장학 정부초청외국인장학 제주장학회장학	제천시장학 중구청장학 태백시민항토장학 평창군장학 평택시애향장학 포항시장학 해군장학 해외인턴십장학
---	--	--	--	--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

청년창업농육성장학	농식품인재 및 농업인자녀 장학
-----------	------------------

○ 한국장학재단 장학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우수장학(이공계/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	입학금지원장학
국가장학금 II유형	희망사다리 I·II유형(중소기업취업연계,고졸후학 습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장학재단장학

4.19기념장학 기송장학 경동송천장학 경진대회장학 고촌장학 관정이종환장학 관우장학 교차로신문시장학 군포사랑장학 글로벌우체국장학 금강장학 꿈을나누는사람들장학 남대문로터리클럽장학 남산형제축구장학 노스페이스장학 노엽장학 농협문화복지장학 담오장학 대원장학 대한전기협회장학 덕영장학 동방장학 디오인터랙티브장학 리서인계수 행복나눔장학	로타리문화장학 롯데재단장학 메가스터디장학 목암과학재단장학 문암장학 미래에셋국내장학 미래에셋장학 미래의동반자재단장학 박종윤로타리장학 백산장학 백운장학 백천장학 본술김종한장학 부남장학 산학협동장학 삼선장학 삼성품장학 삼송장학 상덕장학 상록장학 서울메트로장학 선도장학 선암장학 선현장학	설원량장학 설송장학 성보장학 성옥장학 성찬회장학 송복은장학 송산장학 수원사랑장학 신라문화장학 신천개발장학 아산사회복지장학 아이레보장학 안산꿈키움장학 엘트웰민초장학 염곡문화장학 영풍문화장학 예은장학 오투기장학 오퍼스장학 용운장학 우덕장학 우석장학 우양재단장학 우학재단장학	유당장학 유정장학 은정불교문화장학 의송장학 이브자리장학 이스테파노장학 이웃린치과장학 인곡장학 일주학문문화장학 재암문화재단장학 전북꿈나무장학 정산장학 정석규관명장학 정수장학 정인옥학술장학 제넥스팜장학 직업능력개발학자금장학 청곡장학 청탑장학 코바코장학 큰사랑이한애장학 키움증권장학 평통여성장학 필정장학	하림장학 하정학술장학 한국대학봉사회 한국라이온스장학 한국로타리장학 한국유리육영장학 한국지도자육성장학 한화외국인장학 해성장학 형남진장학 형애장학 홍산장학 화강문화재단장학 화엄장학 흥한재단장학 ASEMDUO장학 CJ엔터테인먼트장학 KSD나눔재단 장학 KT 창의혁신 장학 KT&G장학 S&T장학 With U장학
---	---	---	---	---

■ 제출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국대학교가 본인의 학적과 성적을 조회할 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 Name : (_____)

School Address : (_____)

School E-mail Address : (_____)

School TEL : (_____), FAX :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

Student Full Name : (_____)

Date of birth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Date of admission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Date of graduation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I am the above person who is (or was) a student of your school. I have applied to Dongguk University in Korea for 2023 academic year and I have agreed that Dongguk University can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Dongguk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

Date : 2022 . _____ . _____

Applicant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Office of Admissions ,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26, Pil-dong 3-ga),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 82-2-2260-8861

Fax : 82-2-2260-3696

E-mail : ipsi@dongguk.edu

Homepage : <http://ipsi.dongguk.edu>

국외학교 학력 및 성적조회 시 첨부할 지원자의 동의서 서식입니다. 위 동의서의 ()안의 내용을 재학한 국가의 언어(영어)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재학한 학교의 수(초, 중, 고등학교 과정)만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 한 개의 학교 12년 재학 시 초, 중, 고등학교 과정 각 1장씩 총 3장

세 개의 학교 3년(고등학교 과정) 재학 시 학교 당 각 1장씩 총 3장)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참고용)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홍길동	연락처 (Phone No.) 000-0000-0000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000000-0000000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미포함 No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번호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지원자격기간 1년 전 부터(from) 2023.03.01. 까지(to)
용도(Purpose)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출입국 사실 확인용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동국대학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02-2260-8861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동국대학교 입학 관계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인 Applicant Name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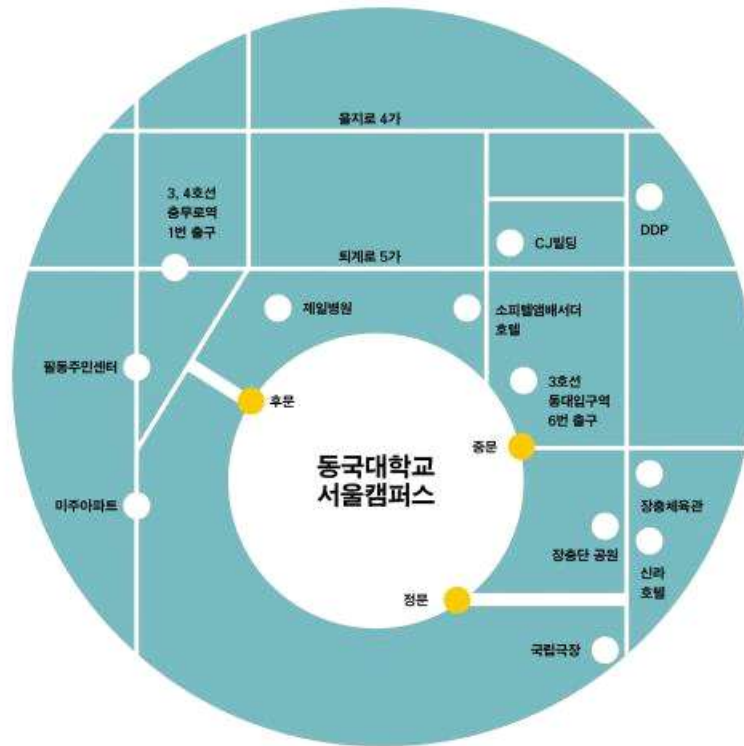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홍길동**

210mm × 297mm [백상지(80g / m²) 또는 중질지(80g / m²)]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또는 입학처 홈페이지 기출문제/서식 탭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이용 | 3,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버스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 7212 | 간선버스 : 144, 301, 407, 420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 7011 | 간선버스 : 104, 105, 140, 421, 463, 507, 604

자가용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으로만 가능

분당방면 : 한남대교 → 남산국립극장 400m 전방 → 동국대 정문

강남방면 : 동호대교 →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용산방면 : 남산2호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 동국대 정문

동대문방면 : 장충사거리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우리대학 입학처 방문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동대입구역 방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각종 고사에 응시하는 경우 안내된 고사장과 가까운 지하철 역 또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